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수 산 생 물 질 병 관 리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수산물 질병관리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각각 개정(대통령령 제3247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, 해양수산부령 제535호, 2022. 2. 22,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에 제5호의2, 제8호의2, 제9호의2,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
까지,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, 제15호의2, 제15호의3, 제16호의2
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역사의 위촉

8의2.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생물거래기록 작성·보존 등에 관한 사항

9의2.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

10의2. 법 제24조제2항 따른 수입금지 물건을 허가한 경우 수입방법과
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조건 지정

10의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
한 방법 지정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검역물
처리 명령의 승인

10의4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
수출국의 위생조건 규정 지정·고시

14의2. 법 제37조의 5에 따른 국가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

14의3. 법 제37조의10제6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출입
조사

14의4. 법 제37조의15에 따른 공수산물질병관리사의 업무 지정, 지휘 · 감독 등

14의5. 법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물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

15의2.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

15의3. 법 제43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와 관련한 비용의 지원

16의2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및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의 지시

16의3.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산물질병관리사 또는 수산물질병관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와 명령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략)	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5의2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역사의 위촉</u>
6. ~ 8. (생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8의2.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거래기록 작성·보존 등에 관한 사항</u>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9의2.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</u>
10. (생략)	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10의2. 법 제24조제2항 따른 수입금지 물건을 허가한 경우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의 조건 지정</u>
<u><신설></u>	<u>10의3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방</u>

<신 설>

11. ~ 14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5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역상 안전한 방법 지정 및 제2
5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
에 따른 지정검역물 처리 명
령의 승인

10의4.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
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
어야 하는 수출국의 위생조건
규정 지정·고시

11. ~ 14. (현행과 같음)

14의2. 법 제37조의 5에 따른 국
가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

14의3. 법 제37조의10제6항에
따른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
식장 출입 조사

14의4. 법 제37조의15에 따른
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 지
정, 지휘·감독 등

14의5. 법 제37조의18에 따른
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
관한 업무

15. (현행과 같음)

15의2.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
금의 지급

15의3. 법 제43조에 따른 수산
생물질병관리와 관련한 비용
의 지원

1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17. (생 략) ③ ~ ⑥ (생 략)	16. (현행과 같음) <u>16의2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</u> <u>수입중단 및 수입검역에 관하</u> <u>여 필요한 조치의 지시</u> <u>16의3. 법 제45조의2에 따른 수</u> <u>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</u> <u>관리원에 대한 필요한 지도와</u> <u>명령</u> 17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26